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336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허윤정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33,736원 및 그 중 18,084,313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433,784원 및 그 중 18,084,313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6면 13행의 ‘23,638,427’은 ‘23,638,472’로, 7면 14행의 ‘48,998,982’는 ‘48,998,682’로, ‘7,896,219’는 ‘7,896,171’로, 7면 8, 15행의 각 ‘80,752,960’은 ‘80,752,912’로, 7면 10행과 8면 4행의 각 ‘152,349,471’은 ‘152,349,423’으로, 8면 4, 7행의 각 ‘170,433,784’는 ‘170,433,736’으로 각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70,433,736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8,084,313원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 연대보증을 한 이상 시공사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개인 보증인이 되는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일은 없다고 말해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가 부도가 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주채무자 D도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원고는 위 회사와 D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피고에게는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피고에게 장기간 동안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갚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가혹한 조치이다. 원고는 피고 부부의 전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395,820,000원의 가압류를 해 오랜 기간 피고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었지만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43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 가족은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 원고는 대형은행으로서 대출원금을 95% 이상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다.

2) 살피건대,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5257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연대보증인은 본래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이 자력이 없을 경우에도 채무 전액을 책임 져야 하는 것이다. 을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6. 이미 피고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마쳐 놓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가압류를 당하거나 장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은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기에 채무를 이행해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을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청 구 원 인

1.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소외 D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대출금을 결제일에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위 약정은 해지되며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은 3개월 미만 연체시에는 연17%,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연19%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 아 래 —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상환방법	약정 금리
일반자금대출	329,850,000	2009. 11. 26.	2011. 03. 31.	만기일시 상환	91일 CD유통수익률 + 3.5 %

나. 위 대출약정에 대하여 피고는 금395,82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 입보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근보증서).

위 대출금은 채무자 소외 D이 분양받은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의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인 바, 본 사건 피고 외에도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 동 대출에 연대입보하였습니다.

2. 위 대출금의 연체 및 일부 상환 과정

가. 대여금 판결

원고는 D의 위임을 받아 대출 약정금 329,850,000원을 모두 중도금으로 납부하여 대출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D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바 있습니다(갑 제3호증 항소심 판결문, 갑 제4호증 확정증명원).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위 약정금 329,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7.11.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11,240,764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2013.3.7. 위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회생절차에서 보증금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가 금84,665,503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잔액 금245,184,497원의 원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금을 채무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자가 아닌 원금에 먼저 변제충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금 329,850,000원에 대한 2012.7.12.부터 출자전환일인 2013.3.7.까지의 확정미수이자 금36,717,275원($329,850,000\text{원} \times 239/365 \times 17\%$)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청구하는 나머지 대출잔액 금245,184,497원에 대하여 2013.3.8.부터 2013.9.30.까지의 미수이자 금23,638,427원($245,184,497\text{원} \times 207/365 \times 17\%$)이므로 합계금 71,596,511원의 확정미수이자도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위 갑 제3호증 판결문 8 내지 9페이지).

나.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



위 판결 이후, 원고는 위 분양 건물의 제분양에 따라 그 대금 196,185,815원을 2015.6.30. 수령하여 원금에 먼저 변제충당하였는바, 원금이 48,998,682원이 남게 된 상태에서 채무자 D은 2015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 71639호로 동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은 위 원금 48,998,682원과 확정미수이자 금164,262,345원이 있는 것으로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었는데(갑 제5호증), 확정미수이자 금은 위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된 금71,596,511원 및 동 판결 이후 제분양으로 인한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상환함에 따라 개인회생채권목록 기준일 2016.6.10.까지 추가로 발생한 금92,665,833원의 합계금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확정미수이자 금액의 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금액	기산일	만료일	일 수	이율	지연손해금
245,184,497	2013.10.01	2014.01.24	116	17 %	13,246,680
245,184,497	2014.01.25	2015.06.30	522	20 %	70,129,483
48,998,982	2015.07.01	2016.06.10	346	20 %	9,289,670
계					92,665,833

그러므로 본 사건 피고도 2016.6.10.기준 위 원금 48,998,982원과 확정미수이자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촉진에 의한 특례법에 의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적용을 받지 않아 추가로 80,752,960원의 확정미수이자만이 발생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된 기존 금액 금71,596,511원을 합한 금152,349,471원의 확정미수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에 대한 추가 확정미수이자 산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준금액	기산일	만료일	일 수	이율	지연손해금
245,184,497	2013.10.01	2015.06.30	638	17 %	72,856,741
48,998,982	2015.07.01	2016.06.10	346	17 %	7,896,219
계					80,752,960

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분할상환



위 소의 D는 자신의 월평균 급여액 금3,732,435원을 변제자원으로 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25일마다 원금 금30,904,54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갑 제6호증의 1. 변제계획안, 갑 제6호증의 2. 변제예정액표), 원고는 등 변제계획안에 의하여 2017.8.2.부터 2022.1.25.까지 총 30,914,369원을 분할상환받았습니다.

3. 피고의 보증금 상환의무

위와 같은 주채무자 D의 상환내역에 의하면 보증인인 본 사건 피고는 원금 18,084,313원(금48,998,682원 -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금 30,914,369원)과 확정미수이자 금152,349,471원의 합계액 170,433,784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 변제받은 금액을 원금에 상환함으로서 추가로 발생하게 된 확정미수이자에 대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 대상에서 제외 함),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170,433,784원 및 이중 금18,084,313원에 대하여는 2016.6.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